
『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』물량내역수정입찰

허용공종 선정기준 검토서

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.”

2013. 11.

서울고등법원
사무국 시설과

『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』
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선정 검토서

검토배경

○ 「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」

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2호, 2012.9.22) 제2조의2에 의함.

제2조2(적용방법 등)

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수정입찰 하고자 할 경우에는,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사유를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
○ 「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」

(조달청 토목환경과-1740호, 2013. 05. 27.) 제28조

제28조(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)

①적정성심사기준 제2조 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(세부공종)의 선정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사업개요

○ 공 사 명 :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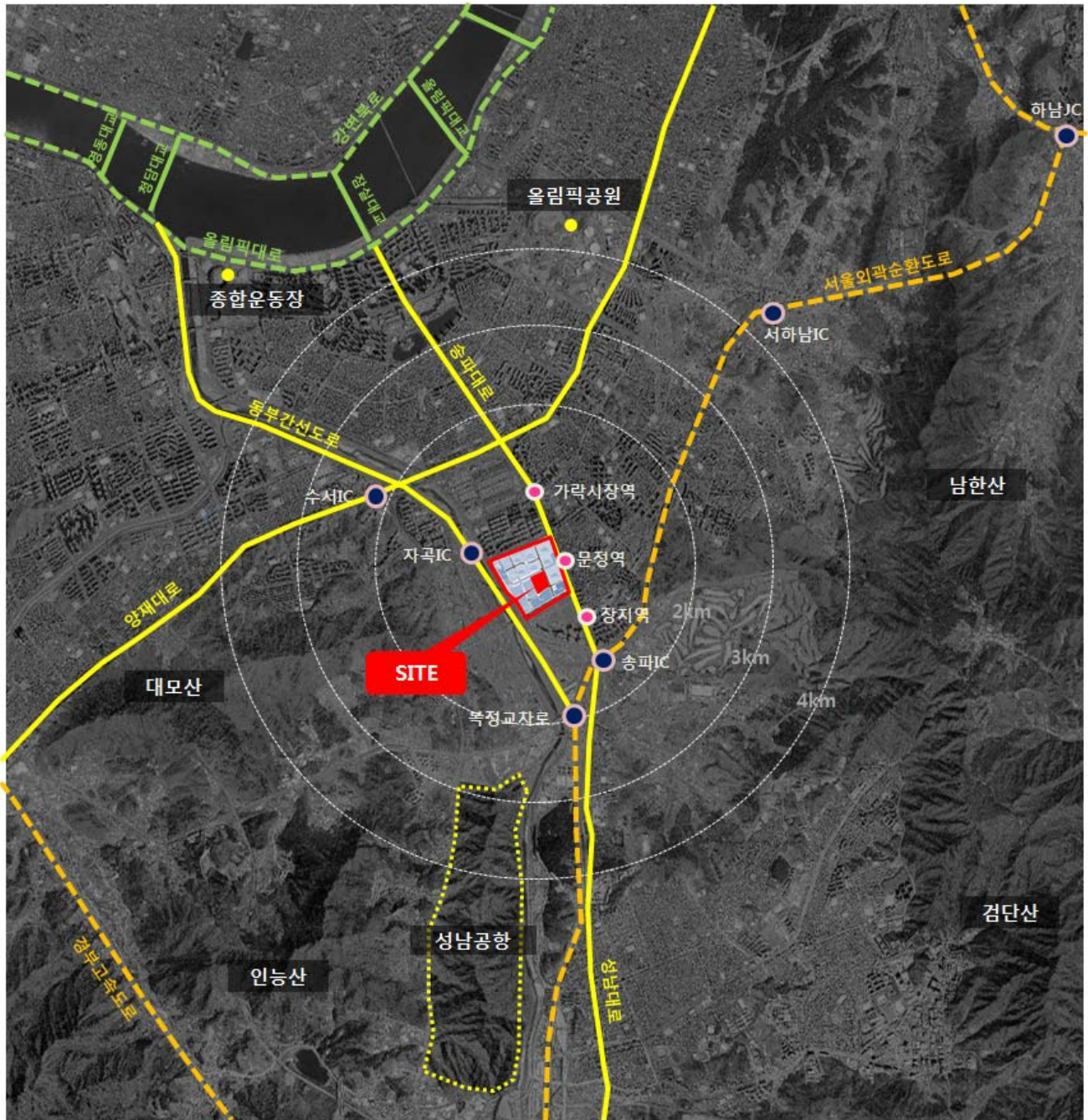
○ 발 주 자 : 서울고등법원

○ 사업목적

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의 신축공사로 기존 오래된 청사의 수요시설을 확보하고 부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친근감을 갖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법기관 기반시설 마련

공사내용

○ 현장위치 :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0번지 일대(문정도시개발지구 내9-2구역)



○ 면 적 : 대지면적 : 29,765㎡, 연면적 : 45,141.26㎡

○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1,095일

○ 공사개요

- 건축공사 : 지정 및 기초공사, 골조 및 마감공사, 기타공사 등

- 기계설비공사 : 장비설치공사, 옥외배관공사, 기계실배관공사 등
- 토목공사 : 토공사, 포장공사, 우·오수공사, 부대공사 등
- 조경공사 : 식재공사, 시설물공사, 포장공사, 부대공사 등

○ 공사비 예산 : 1,008억(부가세, 전기, 통신, 관급 포함)

□ 허용공종 및 제한공종 선정검토

○ 물량수정 허용공종

- 수량산출의 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공종으로 선정

↳ 붙임1 : 내역서-엑셀자료 참조

○ 물량수정 질의 회신

- 물량수정 질의일시 : 2013. 11. 22. 17:00까지

(e-메일 call@scourt.go.kr과 FAX 02-536-6226 모두 전송)

서울고등법원 시설과 김승주행정관(02-530-2335) 유선통보

- 물량수정 질의회신 : 2013. 11. 28.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“알림마당”, “입찰정보”에 전체 공개

○ 기타공종은 물량수정 제한

- 기타공종은 공사 시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변동 요소가 많아 수정물량 산출 및 확인이 어려우며, 물량수정 허용 시 효율적인 시공에 제약이 우려 됨.
- 물량산출이 복잡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산출 및 검증이 곤란 하고, 산출방식에 따라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하여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공종은 허용제한

『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』

물 량 산 출 기 준

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.”

2013. 11.

서울고등법원
사무국 시설과

물량수정허용공종 품목

○ 해당품목 : 3개 품목

강화유리문, 전동수납식의자, 외부목재데크설치/틀포함 총 3개 품목 적용

[허용공종(건축공사)]

공 종	세부공종	규 격	비고
[유리공사]	강화유리문	유리문,12T*900*2200mm,손보호용	
	강화유리문	유리문,12T*1000*2200mm,손보호용	
	강화유리문	유리문,12T*1000*2600mm,손보호용	
	강화유리문	유리문,12T*1000*2700mm,손보호용	
	강화유리문	유리문,12T*1100*2600mm,손보호용	
	강화유리문	유리문,12T*900*2700mm,손보호용	
	강화유리문	유리문,12T*900*2400mm,손보호용	
[수장공사]	전동 수납식 의자	다목적강단	
[기타공사]	외부목재데크설치/틀포함	T29,3층-1	
	외부목재데크설치/틀포함	T29,3층-2	
	외부목재데크설치/틀포함	T29,4층	
	외부목재데크설치/틀포함	T29,12층	

1. 강화유리문

- 방법: 강화유리문은 창호도기준 시공도로 산정한다

2. 전동 수납식 의자

- 방법 : 다목적강단 전동수납의자는 다목적강단 도면 배치기준 시공도로 산정 한다

3. 외부목재데크설치/틀포함

- 방법 : 외부목재데크는 3층,4층,12층 도면 건축공사부분 외부목재데크 부분을 산정하며 바닥틀 및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한다

『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』 물량내역수정입찰

물량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

□ 적용기준

-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
(계약예규 제112호, 2012.9.22)
-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
(조달청 토목환경과-1740호, 2013.5.27)
- 조달청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운영기준
(조달청 시설기획과-3407호, 2011.7.28.)

□ 심사 세부기준

- 평가기준 : 「조달청 물량내역 적정성심사 운영기준」에 의함
- 물량내역 적합여부 결정
 -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의 물량이 발주부서 확인 물량내역의 수량과 비교하여 99% 미만인 경우 : '부적합' 결정
 -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의 공종명·규격·단위가 발주부서 확인 물량내역의 공종명·규격·단위와 틀린 경우 : '부적합' 결정
 -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에 따라 발주부서가 배부한 설계서 (도면, 시방서, 현장설명서)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: '부적합' 결정
 - 「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」 제32조 1호 내지 4호,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 경우 : '부적합' 결정
 -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'적합' 결정

- 기타 적정성심사 운영기준에 의함.

○ **물량내역 수정범위 및 방법**

-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, 우선순위 등 사전 고지하지 않은 기준 결정은 질의·답변을 통해 조달청 서면 확인 후 지침에 따라 수정 허용

물량수정 허용범위	물량수정 방법
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공종	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일치하게 수정
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 설명서)간 상이한 공종	서울고등법원 시설과 서면확인 후 설계서 중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물량내역서 수정
설계서의 내용 불분명한 공종	서울고등법원 시설과 서면확인 후 물량내역서 수정

- 「적정성심사세부기준」에 따라 물량내역서 작성

- 교부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(위치별, 구조물별, 작업순서별 등)는 유지
- 교부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·규격·단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
- 물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감함
- 신규 세부공종이 발생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은 별도 공종으로 구분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공종에서 제외